

#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2003~58
------------	---------

제출년월일	2003. 11.
제 출 자	거창군수

## □ 제정이유

-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 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뮤어서 자치단체별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토록 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개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등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함.

## □ 주요골자

- 보조단체의 범위 및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지원계획의 공고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7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예산의 지원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회단체 장은 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17조)
-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계리하도록 함(안 제18조)

## □ 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행정자치부 표준(안)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단체의 범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2.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설립과 목적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제3조(지원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군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공고 및 신청)

- ①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거창군홈페이지·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심사)** ①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 자치지원과장, 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의원, 학계, 지방재정과 사회단체활동에 관한 전문적 견문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조사업의 결정)** 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액을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시분은 예산액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정기분의 배분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시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집행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 통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그 심의 결정된 사항을 전년도 12월말까지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사회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통보 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사업시행 시기에 맞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1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심의결정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  
2.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체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7조(정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회원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내용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총소요금액	천원	신청액	천원		
		자부담	천원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단체명

대표자(신청자)

(직인 또는 사인)

###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 참고사항(자기소개서, 사회활동실적, 단체등록증 사본, 정관 등)

※ 지원신청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 작성

# 사업계획서

##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 
- 

## 4. 세부사업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 
- 

## 5. 사업비 산출내역

적요(품명)	계	자부담	군비 보조금	산출기준	비고
계					

【별지 제2호】

## 거창군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내용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총소요금액	천원	신청액	천원
		자부담	천원	

거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신청자)

(직인 또는 사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 
- 

## 4. 세부사업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 
- 

## 5. 사업비 산출내역

적요(품명)	계	자부담	군비 보조금	산출기준	비고
계					